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본 자료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CONTENTS

I. 제도일반 (DB, DC, 개인형IRP)

01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02
0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03
03	임금 및 퇴직급여	05
04	퇴직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절차	06
05	연금계좌 이체 및 실물이전	08
06	중도인출/담보대출	09
07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10
08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종단 시 처리 방법	12
09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신청 방법 (폐업·도산기업)	13
10	자산·부채 관리 및 노후설계	15
11	기타	18

II. DB형 퇴직연금 추가 교육

01	사용자의 적립금	20
----	----------	----

III. DC형 퇴직연금 추가 교육

01	사용자의 부담금	22
02	안정적인 투자 원칙	23
03	적립금 운용 방법별 위험과 수익	25
04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	26

I

제도일반
(DB, DC,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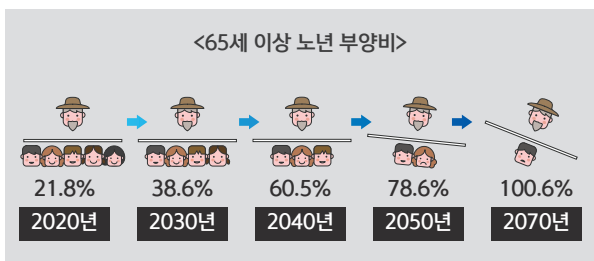
근로환경의 변화

조기 퇴직과 잦은 이직이 일반화되어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줄고, 일하는 기간보다 노후 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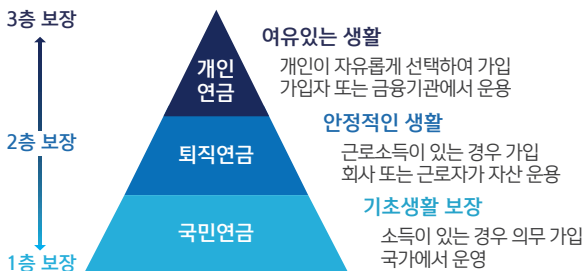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어 65세 이상 노년 부양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노년부양비란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말함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 중위추계

3층 보장체계의 필요성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3층 보장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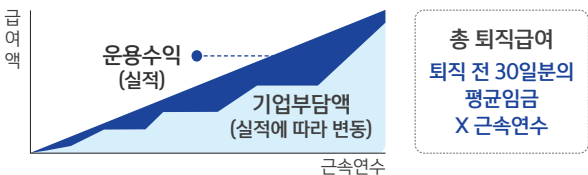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구성됩니다.

확정급여형(DB) 제도

퇴직급여가 퇴직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 자산은 사용자(기업)가 운용하며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확정급여형[DB]이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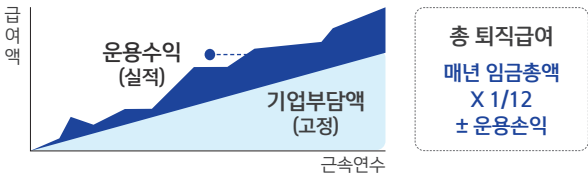


운용
수익률

1.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의 근로자
2.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률이 높은 근로자
3. 호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근로자

확정기여형(DC) 제도

퇴직급여가 근로자별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로, 기업은 매년 근로자를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며 퇴직연금 자산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확정기여형[DC]이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률



운용
수익률

1. 임금인상률이 낮은 기업의 근로자
2. 승진 한계에 다다른 고위직급 근로자
3.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단기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 가입자격

: 퇴직급여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근로자,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

※ 기업형 IRP : 10인 미만 기업이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도입으로 인정

퇴직연금제도 종류별 세부 특징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급여종류	개인형 IRP로 급여이전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요건	퇴직 시		· 연금 : 만55세 이상 및 연금수령기간 5년 이상 · 일시금 : 제한없음
급여액	30일 평균임금 ^{주1)} X 근속연수 (퇴직금제도와 동일)	매년 임금총액 x 1/12 ± 운용수익	납입원금 (퇴직금 또는 개인부담금 ^{주2)}) ± 운용수익
적립금 운용주체	기업	가입자 ^{주3)}	
개인 추가납입	불가	가능 (연간 1,800만원 이내)	
중도인출	불가	가능 ^{주4)}	

주1)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DB제도 퇴직급여 산출에 적용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주2) 개인 추가 납입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 16.5%. 단,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

주3)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적립된 자산은 근로자(가입자)의 지시로 운용되며 퇴직(해지)시 수령하는 급여는 운용성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음

주4)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은 법령상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

임금 및 퇴직급여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고정적인 상여금 등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출근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해져 있는지,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는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및 지급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퇴직급여

DB 퇴직급여 =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 퇴직급여 = 매년 연간 임금총액 X 1/12 ± 운용수익

연금 수령 시 예상 수령액(세전)

※ 연금계산이자율 연 3.5% 가정

수령기간	퇴직급여	5천만원	1억원
10년 수령		월 493천원	월 986천원
15년 수령		월 356천원	월 712천원
20년 수령		월 289천원	월 577천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

근로기준법

-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1주일 12시간 초과 근로 금지(휴일 근로 포함)
- 큰 규모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도입(1.5년 간격)

사업장 규모	시행일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등	2018년 7월 1일
50인 ~ 299인	2020년 1월 1일
5인 ~ 49인	2021년 7월 1일

※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특례제의 업종(금융보험업, 통신업, 여객자동차 운송업, 사회복지사업 등)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

퇴직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절차 (개인형IRP로의 이전절차)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시 **개인형 IRP로의 이전을 의무화^{주1)}** 하고 있습니다. 이전된 퇴직급여는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1)} 퇴직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시 개인형IRP로 이전 의무화 ('22.4.14시행)

퇴직 시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급여종류	퇴직연금 제도	수급요건
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기업형IRP ^{주2)}	· 개인형IRP로 이전 후 연금수령 가능
	개인형IRP	·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 단, 퇴직금 수령 시 가입기간 요건 불요 ·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	모든 제도	· 연금수급 요건이 안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주2)}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기업형IRP의 경우, 퇴직 시 개인형IRP로 의무이전 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연금의 지급은 개인형IRP에서 이루어 짐

퇴직 시 지급절차

1

근로자

이직·퇴직으로 퇴직급여 지급 사유발생
→ **개인형IRP 계좌 개설 후 계좌 정보를 사업장에 제출**

2

사업장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급여 지급 신청

3

퇴직연금
사업자

급여 지급 신청 접수 및 지시 전달
→ **운용자산 매각 후 지정된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급여 입금** ※ 동일금융기관:실물이전 가능

4

근로자
(개인형 IRP)

개인형 IRP 자산매수 및 운용
또는 운용자산 매각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 개인형IRP로의 의무이전 제외사유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단,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 한도 내)
- 퇴직급여액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퇴직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절차 (개인형IRP로의 이전절차)

개인형IRP로의 이전시 효과



과세이연 효과

개인형IRP로 납입한 적립금은 해지 또한 연금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됨



수령시 저율과세

연금수령요건 충족시, 연금으로 수령하여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가능



세액공제 효과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원까지 개인추가부담금 납입분 세액공제

개인형IRP로의 이전 후 적립금 운용방법 및 상품

- 개인형IRP에 납입된 퇴직금 및 개인추가납입금으로 정기예금, 수익증권(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운용상품 및 투자비율은 가입자가 직접 결정하며 그 운용결과는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운용상품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는 개인형IRP를 가입한 금융기관의 상담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IRP의 개인부담금 납입 한도

개인부담금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주1)}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주2)} + 1주택 기초연금수급자의 부동산 양도 차액 ^{주3)}
세액공제 ^{주4)} 한도	연금저축 및 DC 개인 추가 납입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 + ISA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주1)} 의 10% (300만원 한도)

주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금액을 만기일로부터 60일내 IRP계좌로 전환 입금 시,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

주2)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의 2 제2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 고령가입자가 주택거래로 발생한 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주3)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의 2 제2항 제1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주택 다운사이징 차액과 합산 생애 누적 1억원 한도)

주4) 세액공제율 : 16.5%. 단, 종합소득 4,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

연금계좌 이체 및 실물이전

연금계좌 이체

-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 이체는 이체 받을 금융회사(신규 가입 회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연금계좌로 이체하고자 할 경우 신규계좌개설이 생략되므로 이체하는 금융회사에서도 신청 가능)

- 연금계좌 이체의 종류
- ① IRP ↔ IRP간 이체
 - ② IRP ↔ 연금저축계좌간 이체
 - ③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간 이체

참조 : 연금저축계좌 ↔ IRP간 이전제도 ('16.7.1 시행)



연금수령요건* 갖춘 경우 이전 가능합니다!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동시 충족.
단, 퇴직금 입금 시 가입기간 조건 충족 불필요

IRP (개인형퇴직연금)
위험자산* 뿐만 아니라 RP,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에도 투자 가능

← IRP로 이동 →
← 연금저축계좌로 이동 →

연금저축계좌
· 중도인출이 자유롭다.
· 위험자산 투자에 제한이 없다

*위험자산(주식형펀드 등)은 최대 70% 까지 투자가능

실물이전

기존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시 상품을 해지 후 현금화하여 변경했습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에 따라 낮은 금리가 적용되어 해지에 따른 손실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24년 10월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실물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상품 해지(매도 등) 없이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물이전이 가능한 조건

조건 1 DB ↔ DB, DC ↔ DC, IRP ↔ IRP

조건 2 운용/자산관리 기관 동일

☒ **상품 그대로
현물이전**

· 예금 (DC→IRP 동일 회사 내 실물이전한 예금 제외)
· 수익증권, 채권, ELB, ETF

☒ **현금화하여
이전 (현금이전)**

· DC→IRP 동일 회사 내 실물이전한 예금상품
· 디폴트옵션, 리츠, RP 등

중도인출/담보대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확정급여형(DB) 가입자는 중도인출 불가)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가능 법정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사유	중도인출	담보대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	○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
가입자 및 가입자의 부양가족 ^{주1)} 이 6개월 이상 요양하오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주2)} 를 부담하는 경우 ※ 단, DC중도인출의 경우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	○	○
직전 5년 이내 가입자가 회생절차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주3)}	○	○
직전 5년 이내 가입자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주3)}	○	○
가입자 및 가입자의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X	○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함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X	○
재난 ^{주4)} 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X

주1)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

주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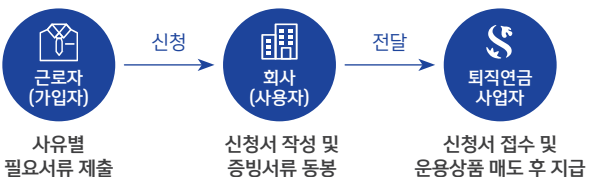
주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주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 담보대출 (미시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상 수급액 변경에 따른 관련법(임금채권법 등)과의 상충으로 실질적인 담보 인정이 어려워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음

참고 : 중도인출 프로세스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시

원천 및 인출순서	세율
① 공제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주1)}	과세제외
② 퇴직금	퇴직소득세의 70% ^{주2)} 를 나누어 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
③ 공제받은 개인부담금 및 계좌 내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연령에 따라 5.5~3.3% ^{주3)}) 원천징수 →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함 ^{주4)} ※ 조건부 분리과세

일시금 수령 시

원천 및 인출순서	세율
① 공제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주1)}	과세제외
② 퇴직금	· 퇴직소득세 100% 과세 ※ 분류과세 · 부득이한 경우 ^{주5), 주6)} : 퇴직소득세의 70% ※ 무조건 분리과세
③ 공제받은 개인부담금 및 계좌 내 운용수익	· 일반적인 경우 : 기타소득세(16.5%) 과세 · 부득이한 경우 ^{주5)} : 연금소득세(연령에 따라 5.5~3.3% ^{주3)})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

주1)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원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제출 필요)

주2) 실제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 적용

주3)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 차등 과세
: 69세 이하 5.5%,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

주4) 연간 사적 연금소득금액(퇴직금 등 제외)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에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포함) 중 선택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5) 부득이한 경우 : 사망, 해외이주, 개인파산/회생, 천재지변,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본인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금액 한도 있음)

주6) DC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금을 인출시,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근로, 연금, 사업 등의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실제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의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세율은 낮아지고, 퇴직금이 커질수록 세율은 높아집니다.)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① 퇴직급여액

②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③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천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④ 환산급여계산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⑤ 퇴직소득공제 (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	환산급여공제
8백만원 이하	전액공제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 ×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 ×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 ×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 × 35%

⑥ 퇴직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⑦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⑧ 퇴직소득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2025년 현행 세법에 따라 계산된 자료입니다.

※ 과거에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다시 계산 할 수 있는 '퇴직소득 세액정산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 처리 방법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 사유

- ☒ 노사합의로 퇴직연금제도 폐지
- ☒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단 명령 등

처리 방법

- ①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개인형IRP로 이전)
- ②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

퇴직연금제도가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중단 사유

- ☒ 일시적인 재정압박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 ☒ 사업자가 등록 취소 된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하도록 명령을 내린 경우

처리 방법

- ① 가입자의 개인부담금 납입, 급여지급, 적립금 운용,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및 가입자 교육 등은 계속 수행

(폐업·도산기업)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신청 방법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급여를 지급 받아야 하나, **사업장의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도산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자께서는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미청구 퇴직연금적립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AccountInfo)

미청구퇴직연금 조회

- 회사의 폐업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 미청구퇴직연금 정보를 조회 후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계좌
한눈에

본인계좌
실종자금융지

비대면 계좌개설
안내제안

내카드
한눈에

내투자성향
한눈에

금융정보
조회

계좌자동이체
등록관리

카드자동납부
등록관리

내후원병행
한눈에

서비스
안내

고객
지원

클릭 한번으로 내 카드 한눈에!

출처에 있는 모든 카드내역을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Quick Menu
카드·후원·제안하기

내계좌 한눈에

본인계좌 실종자금융지

내카드 한눈에

카드자동이체 등록관리

투자자산병행정보조회

계좌자동이체등록

카드자동납부조회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에서 확인 혹은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 통합관리 앱 → 미청구퇴직연금 조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폐업·도산기업)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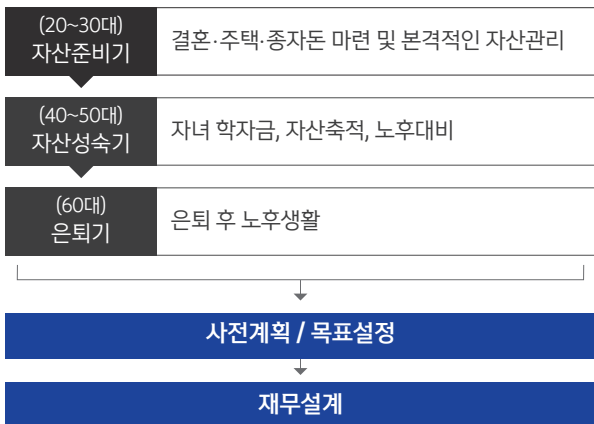
미청구 퇴직연금 지급신청 안내

신청 방법	①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조회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전 금융사 내역 확인 → 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가입여부 확인 ② (가입자의 경우) 미청구적립금 신청 • 가까운 영업점 방문 • 신한투자증권 MTS(신한 SOL증권) → 메뉴 → 연금/ISA → 퇴직연금/IRP → 퇴직연금/IRP 정보관리 → 퇴직연금 미청구적립금 신청 ③ 미청구 적립금 지급
필요 서류	☒ 신분증 ☒ 급여 신청 근로자(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 자격상실 확인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급여 신청 근로자(가입자)의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
유의 사항	☒ 체당금을 수령하신 경우 당사 퇴직연금 수령시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수령내역을 통지하셔야 합니다. ☒ 대표자 또는 임원의 경우 압류/상계 대상 채권 여부에 따라 수령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퇴직금 전액을 정상 수령한 경우, 당사 퇴직 연금수령에 대해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산·부채 관리 및 노후설계

자산·부채관리

인생의 각 단계별 상황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재무 사건들을 미리 예상하고 계획하고 조절하는 자산·부채관리가 필요합니다.



평균적 생애설계 시 고려사항

우리사회는 고령화, 고물가, 저금리 시대에 직면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5~10년의 소득공백 발생

→ 자녀교육비, 결혼자금, 부모부양비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

목표자금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노후설계 필요

은퇴 시 필요자금과 준비자금의 은퇴시점 가치가 일치하도록 투자

노후 필요자금 산출

- 01 기본 정보 정리 | 배우자, 자녀 현황 / 각각의 목표정리 / 자산현황 등
- 02 필요 자금 분석 | 각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요 자금 분석
- 03 준비 자금 분석 | 목표 실현을 위해 현재 준비자금 파악 및 확보 계획
- 04 부족/잉여 자금 분석 | 차이 분석(준비자금 - 필요자금)
- 05 평가/대안 마련 | 부족분에 대한 대책 마련

자산·부채 관리 및 노후설계

① 기본 정보 정리 (예시)

노후 필요자금 산출을 위하여 현재의 가족현황과 재무상태 그리고 향후 계획을 미리 상세히 파악해 봅니다.

가족현황	연령	월 수입
남편	38세	300만원
아내	34세	260만원
자녀	7세	-

재무상태

자산	금액(만원)	부채	금액(만원)
현금자산	1,300	주택담보대출	3,000
은퇴자산 (국민연금, 개인연금)	1,600	자동차 할부금	1,900
부동산 및 자동차	28,000	부채총액	4,900
자산총액	30,900	순자산 (자산총액-부채총액)	26,000

향후계획

항목	시점
주택확장	7년 후
자녀교육비(대학교)	12년 후
노후자금	22년 후

② 필요 자금 분석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를 산정해 봅니다. 구체적인 목표별로 필요예상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예상금액의 현재가치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예시 : 현재가치 이자율 연 3.5%

항목	시점	필요예상금액	필요예상금액의 현재가치
주택확장	7년 후	12,700만원	10,000만원
자녀교육비 (대학교)	12년 후	7,500만원	5,000만원
노후자금	22년 후	127,800만원	60,000만원

자산·부채 관리 및 노후설계

③ 준비 자금 분석

현재 보유 중인 자산 중 특정한 재무목표를 위해 미리 용도를 정해 놓은 자금을 먼저 할당한 뒤,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자산을 배분합니다. 노후설계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에 꼬리표를 달듯 목표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	금액	적립계획
대출상환	3,000만원	월 60만원씩 4년간 대출상환 (대출이율 : 연 3.5%)
주택확장	12,700만원	월 110만원씩 7년간 적립식펀드 (목표수익률 : 연 9.0%)
자녀교육비 (대학교)	7,500만원	월 40만원씩 12년간 정기적금 (목표수익률 연 4.3%)
노후자금	127,800만원	월 32만원씩 22년간 연금보험료 납입 (목표수익률 : 연 3.5%)

④ 부족/잉여 자금 분석

계산된 준비자금에서 필요자금을 빼 봅니다. 전체의 과부족도 중요하지만 각 재무 목표별로 과부족을 계산해보고 필요하다면 목표별 자금의 재배분도 수행합니다.

⑤ 평가/대안 마련

부족/잉여 자금 분석 후 자신의 노후 필요자금 준비현황에 대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목표자금의 규모나 목표수익률 수준을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 조회 → 연금포털 로그인

비대면 IRP 연금수령 신청방법

< 연금개시 신청/조회 >	가이드
연금 가입 후 5년 이상 O (5년 이상)	
전고 100만원 이상 보유여부 O (100만원 이상)	
IRP 연금 개시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하단의 필수 확인항목을 확인하시고 "IRP 연금 개시 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확인 항목	확인
연금개시신청 후에는 추가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자부담금은 전액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연금지급은 비율지급(기간균등)만 가능합니다.	☐
연금지급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과세제외금액 2.퇴직소득 3.기타소득재원	☐
IRP 연금 개시 신청	

< 연금개시 신청/조회 >	가이드		
연금 수령 형태	O 원		
연금 수령 잔여 한도	O 원		
연금 신청일	2018.07.19		
최초 연금 수령일	2018.07.19		
차회 연금 수령일	2023.10.02		
연금 수령 차차	15		
연금 지급 정보			
연금 수령 방식	비율지급(기간균등)		
연금 수령 기간	310개월		
연금 수령 주기	년별		
연금 수령일	1월		
연간 연금 지급 내역			
회차	지급일	상태	지급 금액
9	2024.10.01	지급예정	3,555,496 원

- 연금개시 후 추가입금 불가 확인
- 연금 지급 시 인출 순서 안내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개시 전 확인 필수

- 연금 수령 연차와 연금 수령 한도 확인
- 수령기간, 지급주기, 지급일자 설정
- 연금지급계좌 입력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

- 18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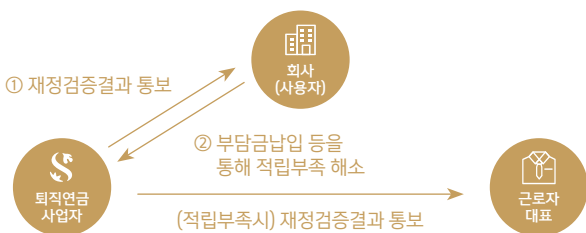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추가 교육

사용자의 적립금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용자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이하 “재정검증”)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 재정검증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대표*에게 재정검증결과를 통보
- ☑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법정) 최소적립비율

구분	'15.12.31	'13.12.31	'18.12.31	'21.12.31	'22년 이후
최소 적립비율	60%	70%	80%	90%	100%

※ 단,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최소적립비율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따른다.

적립금부족 해소 방안

부담금납입 등

사용자는 부담금납입 등을 통해 최소 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해소

▶ 해소시기 :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100% 초과

▶ 사용자는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하여 입금 가능

150% 초과

▶ 사용자가 150% 초과 부분을 반환 요청 시 초과분 반환 가능

기준책임준비금 :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적립금 운용 현황

적립금 운용현황은 개별교육자료 또는 신한투자증권 사이버창구(기업전용)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III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추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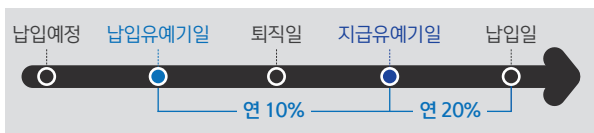
사용자의 부담금

부담금 수준

부담금 수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 납입시기	연간 1회 이상,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
부담금 납입상황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조회

부담금 납입 지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및 기업형IRP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 규약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성실히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일에 따라 법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납입유예기일 : 연장된 납입기일로 퇴직연금 규약의 정함에 따름
- 지급유예기일 : 연장된 지급기일로 퇴직연금 규약의 정함에 따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

- 첫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을 인정한 경우
- 둘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셋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넷째, 그 밖에 앞의 세 가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부담금 추가 납입 (선택사항)

안정적인 노후 연금자산 마련을 위해 가입자가 자기부담으로 개인부담금을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IRP로 납입 할 수 있습니다.

- 연간 90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 (DC, IRP, 연금저축 개인부담금의 합계)
- 연간 1,800만원 한도 내 납입 가능 (모든 금융기관 DC, IRP, 연금저축 개인부담금의 합계)

- ※ 개인부담금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연금계좌(DC, IRP,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개인부담금 합산하여 적용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A) 만기 시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납입가능
-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총 1억원 한도) 연금계좌로 납입가능

안정적인 투자 원칙

고객님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 운용의 3가지 원칙”을 지켜주세요.



분산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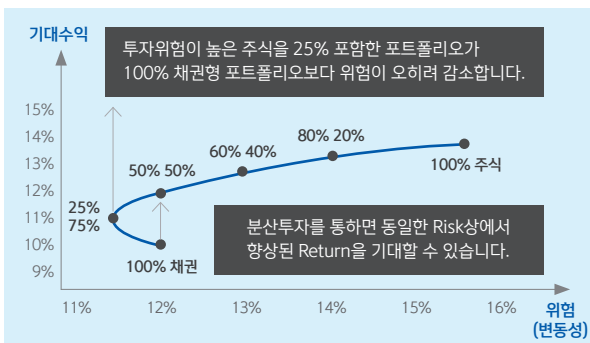
분산투자란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투자상품들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군별 상관관계

- 서로 다른 종류의 투자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투자자들은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목 분산 :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지키고!

- 포트폴리오 내에 투자 되는 종목의 수가 증가하면 개별종목이 가지고 있는 고유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ETF를 활용하여 여러 주식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다양한 ETF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솔루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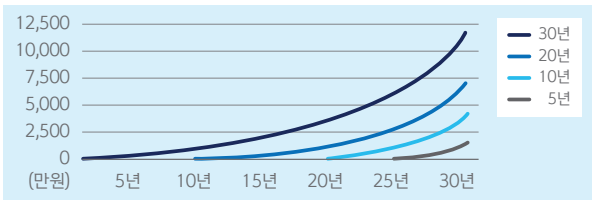
안정적인 투자 원칙

장기투자

수익률의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투자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의 변동성은 감소하므로 장기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법령상 사유를 제외하고 중도인출을 할 수 없어 자연스럽게 장기투자가 이루어지며 이에 복리효과까지 더해져서 투자기간이 길수록 적립금은 체증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기투자에 따른 복리효과의 예>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금에 매년 250만원(연간 임금총액 3,000만원의 1/12)이 적립되고 있으며 운용 수익률은 3%로 가정

투자기간	적립금
5년	1,367만원
10년	2,952만원
20년	6,919만원
30년	12,251만원

정액 분할투자

실적배당상품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면 가격이 낮을 때 많이 매입하고, 가격이 높을 때 적게 매입하게 되어 평균 매입단가가 낮아지는 효과(Cost Average Effect)가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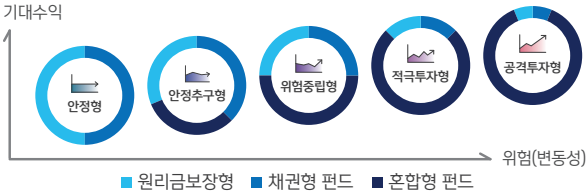
적립금 운용 방법별 위험과 수익

투자는 기대수익이 클수록 위험(변동성)을 감수해야 하며, 기대수익이 낮을수록 위험도 낮아집니다.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배분

본인이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미리 정하고(투자성향 파악), 그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투자성향 분류 예시 >



운용방법별 수익구조와 투자위험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자산은 원금과 이자가 확정된 '원리금보장상품'과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적배당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보다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	실적배당상품
은행 : 정기예금 증권 : ELB (파생결합사채) 보험 : GIC (이율보증형 보험)	채권형 펀드 (채권 100%) 채권혼합형 펀드 (주식비중 40% 이하) 주식혼합형 펀드 (주식비중 40% 초과 ~ 60% 미만) 주식형 펀드 (주식비중 60% 이상)

운용방법(상품)별 수수료 체계

가입자가 운용방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자산에서 매일 차감되는 보수와 일회성으로 부과되는 수수료로 구분 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	실적배당상품
보수	없음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기타보수
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적립금 운용 방법별 위험과 수익

펀드(집합투자증권) 등의 매도기준가

일반적으로 국내 채권혼합형이나 채권형 펀드의 매도접수시, 매도 주문일로부터 3영업일(D+2)의 기준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펀드 별로 실제 기준가 적용일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퇴직연금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있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

DC 또는 IRP제도 가입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 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진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12일 시행)

디폴트옵션 서비스의 선정

퇴직연금사업자 (신한투자증권)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제반 서비스 제공 → 디폴트옵션 승인 ^{주1)} 후 상품 제시 ^{주2)}
 사용자 (DC법인)	DC제도를 운용하는 법인 → 제시 받은 디폴트 옵션 중 선택, 근로자대표 동의 후 규약에 반영
 가입자 (DC/IRP 고객)	DC, IRP제도로 운용하는 고객 → 규약에 반영된 디폴트 옵션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상품을 최종적으로 선정

주1) 디폴트옵션 승인 :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2)

주2) 디폴트옵션 상품 제시 : 디폴트옵션의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자산배분현황, 가입자 보호장치 등을 서면 혹은 정보통신망으로 사업자와 가입자에게 안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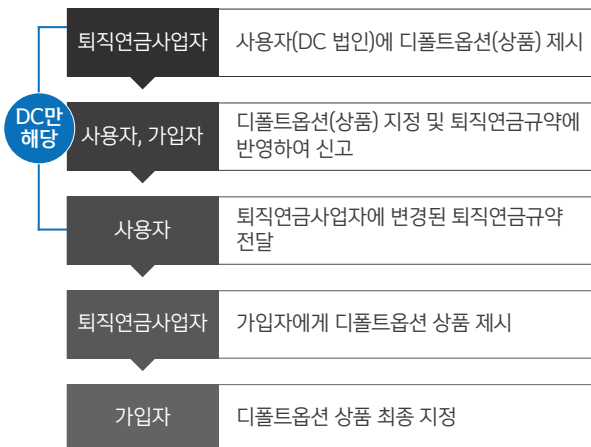
디폴트옵션 적용

구분	기존 가입 (2022.7.11 이전 가입자)	신규 가입자 (2022.7.12 이후 가입자)
통지 시점*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후 4주 이내	신규 가입일 이후
통지 내용 및 실행	① 통지 시점 이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됨을 안내 ② 가입자가 지정한 디폴트옵션에 대한 정보 ③ 디폴트옵션 운용 후에도 언제든지 운용 방법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③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디폴트 옵션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디폴트옵션 상품 지정 프로세스



☒ 신규가입 및 상품 만기 시 등 조건 충족하면 자동 매수

☒ 신규(2주)/기존(6주) 기다리기 힘들면, 직접매수(옵트인)도 가능

Opt-In (옵트인)	Opt-Out (옵트아웃)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적립금을 디폴트옵션으로 바로 운용할 수 있음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 가능

MEMO

[illegible]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1122

- 평일 08:30~17:00
- 상담 외 시간과 휴일·공휴일에는 전화예약 가능
- 퇴직연금 주요 문의사항 상시 제공 (문자/메일)

[고객지원센터] 1588-0365

- 말로하는 AI 상담서비스
- 24시간 챗봇 상담(신한 SOL증권)

[퇴직연금 사이트]

<http://www.shinhansec.com>

-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보호됩니다.
-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100%) 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 됩니다.
-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연금계좌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 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펀드 보수 등 상품별 자체 비용 및 증권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IRP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 0% (단, 펀드 보수 등 상품 자체 비용 발생 가능)